

KR 1-08060

Rev.7 February 2025

교통약자편의시설

2025. 2.



국가철도공단



REVIEW CHART

개정 번호	개정 일자	개정사유 및 내용(근거번호)	작성자	검토자	승인자
0	2012.12.05	설계기준체계 전면개정 (설계기준처-3537, 12.12.05)	조무호	석종근 오준호	김영우
1	2014.06.30	○ 콜폰설비 설치기준 보완 ○ 인터폰과 콜폰 통합주장치 설치기준 마련 (설계기준처-1862, 14.06.30)	황순길	김대원 김학렬	이동렬
2	2018.12.17	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(기준심사처-2831, '18.12.17)	신재범	오준호	민병균
3	2020.07.30	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(기준심사처-3062, '20.07.30)	함만식	박창완 권유철	이계승
4	2020.12.29	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(기준심사처-5242, '20.12.29)	함만식	박창완 신이섭	최원일
5	2021.12.21	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(기준심사처-5033, '21.12.20)	함만식	이창현 신재범	유성기
6	2023.12.28	콜폰 설치기준 명확화 (기준심사처-4991호, '23.12.27)	임선주	이창현 서정민	김종호
7	2025.02.11	“정보통신분야 철도건설기준 고도화 용역” 결과에 따른 각종 문구자구 등 정비(심 사기준처-510, '25. 2. 11.)	권순호	박진용 서정민	손병두

목 차

1. 용어의 정의	1
2. 교통약자 편의시설	1
해설 1. 교통약자 편의시설	2
1.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	2
2. 인터폰설비	2
3. 콜폰설비	2
4. 수유방 입구 및 역무실 인터폰장치	3
5. 인터폰 및 콜폰 통합주장치	3
RECORD HISTORY	4

1. 용어의 정의

(1) 교통약자
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

(2)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

시각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수신기

(3) 인터폰 및 콜폰 통합주장치

인터폰 및 콜폰 자장치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모장치

2. 교통약자편의시설

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(1)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

(2) 장애인용 자동개집표기(통합형 자동개집표기 포함)

(3)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통화장치

(4) 비상통화장치(콜폰) : 여자화장실 각 실, 남자화장실 입구 및 장애인 화장실 등

(5) 수유방 입구 및 역무실 인터폰장치



해설 1. 교통약자 편의시설

1.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

(1) 설치대상

교통시설로서 철도역사에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한다.

(2) 설치기준

역사의 출입구, 계단, 장애인용 승강기, 화장실, 개표구,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, 위험한 장소의 전면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가 필요한 위치의 벽부 또는 천장에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하며,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2. 인터폰설비

(1) 설치기준

- ①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.
- ② 엘리베이터의 이용자 조작설비로 호출버튼·조작반·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m 이상 1.2m 이하로 설치한다. 다만, 현장여건상 1.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.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3. 콜폰설비

(1) 설치기준

① 설치개소

가. 여자화장실

(가) 각 실

(나) 세면대

(다) 벽면

나. 남자화장실 입구

다. 장애인화장실

라. 수유방 내부

- ② 장애인 화장실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6m와 0.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, 바닥면으로부터 0.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콜폰용 버튼 또는 비상용벨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③ 장애인 화장실 외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m 이상 1.2m 이하로 한다.
다만, 현장여건상 1.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.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.

4. 수유방 입구 및 역무실 인터폰장치

(1) 설치기준

수유방 입구에는 역무원 등 역사 운영자 등을 호출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장치를 설치한다.

5. 인터폰 및 콜폰 통합주장치

(1) 설치기준

역무실 또는 역무통신실에 통합 주장치를 설치하여 인터폰 및 콜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RECORD HISTORY

Rev.0('12.12.05)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,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(코드별)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둬.

Rev.1('14.06.30) 콜론설비 설치기준 보완 및 인터폰과 콜론 통합주장치 설치기준 마련으로 설계 경제성 향상과 운전자 편의성 및 유지보수성 증진

Rev.2('18.12.17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3('20.07.30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4('20.12.29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5('21.12.21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6('23.12.28) 콜론 설치기준 명확화

Rev.7('25.02.11) “정보통신분야 철도건설기준 고도화 용역” 결과에 따른 각종 문구·자구 등 정비